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

2020회 계 연 도
결산검사의견서



양 산 시
[결산검사위원회]

목 차

I. 결산검사 의견서	-----	1
II. 결산검사 경과	-----	5
I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	9
1. 양산시 재정현황	-----	11
2. 세입·세출 결산	-----	13
3. 기금의 결산	-----	23
4. 재무제표의 결산	-----	26
5. 성과보고서	-----	27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29
7. 금고의 결산	-----	31
8. 성인지결산	-----	32
IV.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	33
V. 수범사례	-----	57
VI.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	61

Ⅰ . 검 사 의 견 서

결 산 검 사 의 건 서

양산시장 귀하

2021년 4월 20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양산시의회로부터 양산시 2020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4월 20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0회계연도 양산시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양산시의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 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등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양산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양 산 시 결 산 검 사 위 원

대표위원	정 석 자
검사위원	김 봉 호
검사위원	최 원 석
검사위원	김 지 연



Handwritten signatures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corresponding to the names listed in the table: 정석자, 김봉호, 최원석, 김지연.

II . 결산검사 경과

II.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1. 4. 1. ~ 4. 20.(2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위	성명	담당업무	비고
대표위원	정석자	- 결산검사 총괄 -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서	
검사위원	최원석	- 일반 · 특별회계 재무제표	
검사위원	김지연	- 일반 · 특별회계 세입결산	
검사위원	김봉호	- 일반 · 특별회계 세출결산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분	일자별	결산검사 내용	비고
본청 등	4.1.~ 4.18.	- 재정상황 및 건정성 파악 - 세입추계 방법 및 절차 - 세입 불납결손 및 결손처분, 환급 현황 및 절차 - 지방세 미수납액 및 체납처분 절차 - 보조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 - 일반회계 세입 · 세출 현황 -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 현황 - 재무제표(재정운영표, 재정상태) - 채권, 채무, 기금 등 현황 -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	
	4.19. ~ 4.20.	- 결산검사결과 총평 등 마무리 -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간 토의

Ⅲ. 결산검사 총괄 현황

Ⅲ.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양산시 재정현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 · 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 현황 변동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반회계	세입	960,831	1,077,572	1,159,697	1,242,033	1,484,698
	세출	804,132	843,704	960,685	1,051,741	1,256,330
	결산상 잉여금	156,699	233,868	199,012	190,292	228,367
특별회계	세입	133,593	123,718	134,762	153,987	163,395
	세출	69,387	75,759	76,664	77,793	101,982
	결산상 잉여금	44,206	47,959	58,097	76,194	61,412
총계	세입	1,074,424	1,201,290	1,294,459	1,396,020	1,648,092
	세출	873,518	919,462	1,037,350	1,129,534	1,358,313
	결산상 잉여금	200,905	281,827	257,109	266,486	289,779

2020회계연도 재정규모는 세입증가로 인해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23,29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3,567천원이다.

양산시의 현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 즉,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간의 전출금 및 전입금 등 회계 간의 내부거래와 공채발행, 차입, 채무상환이나 전년도 이월금이나 다음해 이월금을 차감한 순계개념의 세입과 세출의 차를 의미한다.

양산시의 최근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재무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자치단체 채무계(a=b+c+d)	180,000	0	0	0	0	
공채(b)	0	0	0	0	0	
차입금(c)	180,000	0	0	0	0	
채무부담행위(d)		0	0	0	0	
지방공기업 채무(e)	0	0	0	0	0	
채무총합계(f=a+e)	180,000	0	0	0	0	

※ 채무액 : 전년도말 및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음

(2) 재정건전성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훈령)에 의하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지표를 주의단계나 심각단계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주의기준	심각(위기)기준
채무관리	① 예산대비채무비율	$\frac{\text{지방채무잔액}}{\text{총예산}}$	25%초과	40%초과
	② 채무상환비 비율	$\frac{\text{지방채무상환액}}{\text{일반재원}}$	12%초과	17%초과
세입관리	③ 지방세 징수액 현황	$\frac{\text{당해연도월별누적징수액}}{\text{최근3년평균월별징수액}}$	50%미만	0%미만
자금관리	④ 금고잔액 현황	$\frac{\text{당해연도분기말잔고}}{\text{최근3년평균분기말잔고}}$	20%미만	10%미만
공기업	⑤ 공기업 부채비율	$\frac{\text{부채}}{\text{순자산}}$	400%초과	600%초과
	⑥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양산시 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다음과 같다.

$$\text{재정자립도} = 29.86 \% \quad \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text{재정자주도} = 55.76 \% \quad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2. 세입 · 세출 결산

(1) 총괄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 · 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A-B)
합계	1,609,154	1,648,092	1,358,313	289,779
일반회계	1,444,735	1,484,698	1,256,330	228,367
특별회계	164,419	163,395	101,983	61,412
공기업특별회계	134,308	132,612	83,157	49,455
기타 특별회계	30,111	30,783	18,825	11,957

회계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월액(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합계	0	102,765	42,436 (3)	2,201	10,267	132,110
일반회계	0	100,550	41,293 (3)	2,201	10,017	74,306
특별회계	0	2,215	1,142	0	250	57,804
공기업특별회계	0	2,188	1,020	0	0	46,246
기타특별회계	0	27	122	0	250	11,558

※ ()는 자금없는 이월임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648,09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609,154백만원보다 3,893백만원 과수납되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4%인 1,358,313백만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89,779백만원이다.

이중 명시이월액 102,765백만원, 사고이월액 42,436백만원 및 계속비 2,201백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0,267백만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서 현년도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32,110백만원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과목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
합계	1,288,158	156,577	1,444,735	1,526,560	1,484,698	38,696	3,166
지방세	281,900	0	281,900	338,236	315,301	21,018	1,917
세외수입	41,108	0	41,108	62,017	43,090	17,678	1,249
지방교부세	227,516	0	227,516	229,005	229,005	0	0
조정교부금 등	71,279	0	71,279	73,573	73,573	0	0
보조금	604,741	0	604,741	604,892	604,892	0	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1,613	156,577	218,190	218,838	218,838	0	0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은 1,484,698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2.8%로서 39,963백만원이 과수납 되었고,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21.2%인 315,301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외 수입은 2.9%인 43,090백만원이 수납되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전체 세수의 61.1%인 907,470백만원이 수납되었다.
-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보조금, 지방세의 증가이며, 지방세의 경우 자동차세 재원인 유가보조금의 세입확보에 기인한다.

○ 불납결손

- 불납결손액은 3,166백만원으로 지방세 1,917백만원, 세외수입 1,249백만원이며, 이는 무재산 1,575백만원, 시효소멸 663백만원, 배분금액 부족 586백만원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하였다.

○ 미수납액

- 미수납액은 38,696백만원으로 지방세 21,018백만원, 세외수입 17,678백만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납세태만 13,679백만원, 자금압박 8,632백만원, 무재산 5,801백만원, 폐업 또는 부도 2,990백만원 등이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484,698	1,484,698	0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였다.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 (D)	예산대비 징수결정액(B/A)	징수결정대비 수납액(C/A)	징수결정대비 불납결손액(D/B)
2020	1,288,158	1,526,560	1,484,698	3,166	118.5%	115.2%	0.20%
2019	1,097,898	1,284,973	1,242,033	3,164	117.0%	113.1%	0.24%
증감	190,260	241,587	242,664	2	1.5%	2.1%	△0.04%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국고보조금, 지방세 등의 증가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1,242,033백만원보다 242,664백만원이 많은 1,484,698백만원이 수납되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대비 2백만원이 증가한 3,166백만원이다.

일반회계 세입금 환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합계	사유별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경정	법령개정	법인정산	기타 등
2020	8,998	42	326	446	1,587	2,763	528	3,305
2019	6,468	71	505	358	423	0	0	5,110
증감	2,529	△29	△179	88	1,164	2,763	528	△1,805

세입금 환급액은 8,99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2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된 이유로는 법령개정 2,763백만원, 국세경정 1,587백만원, 법인정산 528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특정소송의 판례에 따라 법인소득세 외국인 납부세액 환급이 많았기 때문이다.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계		1,444,735	1,526,560	1,484,698	3,166	38,696
지방세	소계	281,900	338,236	315,301	1,917	20,018
	주민세	13,200	13,558	13,266	0	293
	재산세	78,600	81,924	78,282	20	3,622
	자동차세	83,200	116,646	112,633	0	4,013
	담배소비세	23,600	23,674	23,674	0	0
	지방소비세	11,600	11,557	11,557	0	0
	지방소득세	68,700	74,324	72,220	4	2,100
	지난년도수입	3,000	16,553	3,670	1,893	10,990
세외수입	소계	41,108	62,017	43,090	1,249	17,678
	재산임대수입	1,176	1,048	1,004	0	44
	사용료수입	2,085	2,160	1,998	0	161
	수수료수입	3,227	3,409	3,377	0	32
	사업수입	2,237	1,523	1,523	0	0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징수교부금수입	5,642	5,723	5,723	0	0
	이자수입	3,284	3,360	3,360	0	0
	재산매각수입	294	143	143	0	0
	부담금	6,417	6,839	6,273	0	566
	과징금및과태료등	3,698	5,660	3,535	0	2,125
	기타수입	10,348	14,940	13,137	0	1,803
	지난연도수입	2,700	17,211	3,016	1,249	12,945
지방교부세		227,516	229,005	229,005	0	0
조정교부금 등		71,279	73,573	73,573	0	0
보조금		604,741	604,892	604,892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8,190	218,838	218,838	0	0

세목별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21.2%인 315,301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43,090백만원이 수납되었다. 지방교부세는 15.4%인 229,005백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73,573백만원, 보조금은 604,892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18,838백만원이 수납되었다.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
합계	1,288,158	156,577	1,444,735	1,256,330	144,047	10,454	33,904
일반공공행정	59,486	508	59,994	53,114	4,676	125	2,079
공공질서및안전	5,726	2,577	8,303	6,734	1,072	62	435
교육	19,586	6,100	25,687	23,625	1,920	55	86
문화및관광	57,056	23,002	80,058	52,974	25,193	402	1,490
환경보호	103,848	23,225	127,074	101,339	18,463	2,097	5,174

구분	예산액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
사회복지	552,630	4,364	556,994	536,543	8,925	6,124	5,402
보건	21,722	25	21,747	19,261	1,839	360	286
농림해양수산	39,967	3,911	43,878	36,107	6,155	476	1,140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26,300	2,645	28,945	27,908	221	75	741
수송및교통	197,846	58,630	256,476	207,986	40,078	437	7,975
국토 및 지역 개발	79,508	35,418	114,926	77,603	35,503	190	1,629
예비비	6,408	△3,833	2,575	0	0	0	2,575
기타	118,074	3	118,077	113,137	0	50	4,891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1,288,158백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156,577백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444,735백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9%에 해당하는 1,256,330백만원이다.
-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536,543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수송 및 교통 207,986백만원, 기타 113,137백만원, 환경보호 101,339백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예산의 이월

- 이월액은 총 144,04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530백만원 감소하였다. 명시 이월액은 100,550백만원, 사고이월액은 41,297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은 2,201백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로는 시기 미도래, 공기 부족 등이다.

○ 예비비 사용

-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소독용품 등 방역물품 구입, 양산형 고용유지 지원금 등, 제9호, 제10호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 등으로 예비비 3,833백만원을 집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3%에 해당되는 33,904백만원이며, 전년대비 2,482백만원 증가하였고, 주요 사유는 지출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비비 등이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256,330	1,256,330	0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였다.

(3) 특별회계

가.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계	164,419	169,868	163,394	32	6,442
공기업특별회계	134,308	137,498	132,612	17	4,869
상수도특별회계	65,481	65,898	65,118	11	770
하수도특별회계	68,827	71,600	67,494	6	4,099
기타특별회계	30,111	32,370	30,783	15	1,57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457	5,920	4,416	15	1,489
수질개선특별회계	5,828	6,026	6,026	0	0
폐기물처리시설 사업특별회계	4	4	4	0	0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담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186	186	186	0	0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1,904	2,004	2,004	0	0
양산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	8,142	8,718	8,705	0	13
어곡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	3,801	3,679	3,679	0	0.3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789	5,873	5,763	0	70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163,394백만원은 예산현액의 99.4%로서 1,025백만원이 부족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6.2%로 전년도 대비 2.7% 증가하였다.

○ 불납결손액

- 불납결손액은 32백만원이며, 그 사유로는 시효소멸,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등이다.

○ 미수납액

- 미수납액은 6,44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506백만원 감소하였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4,86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16백만원 감소하였으나, 기타특별회계는 1,57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0백만원 증가하였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63,394	163,394	0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였다.

특별회계 세입금 환급 현황

(단위: 원)

연도	합계	사유별			
		행정기관착오	납세자착오	차량,미등기	기타
2020년	170,150	0	170,150	0	0
2019년	2,900	0	2,900	0	0
증감	167,250	0	167,250	0	0

세입금 환급액은 170,150원으로 전년대비 167,250원이 증가하였으며, 납세자 착오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60,515	164,419	101,983	3,358	59,079
공기업특별회계	130,404	134,308	83,157	3,209	47,942
상수도특별회계	62,044	65,481	45,202	1,585	18,694
하수도특별회계	68,360	68,827	37,955	1,623	29,248
기타특별회계	30,111	30,111	18,825	149	11,13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457	4,457	4,336	0	122
수질개선특별회계	5,828	5,828	5,472	27	329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4	4	0	0	4
담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86	186	186	0	0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1,904	1,904	1,043	0	861
양산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	8,142	8,142	2,773	61	5,308
어곡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	3,801	3,801	1,748	61	1,99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789	5,789	3,268	0	2,521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160,515백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904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64,419백만원이다.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2.0%에 해당하는 101,983백만원, 이월액은 2.0%인 3,358백만원, 집행잔액은 35.9%인 59,079백만원이다.

○ 예산의 이월

- 이월액은 3,358백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85백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23백만원, 양산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61백만원, 어곡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61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7백만원이다.

○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59,079백만원으로 전년도 73,479백만원에 비해 14,400백만원이 감소하였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01,983	101,983	0

특별회계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였다.

(4) 이월사업비

2020회계연도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은 다음과 같다.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비고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244	102,765	127	42,439 (3)	4	2,201	
일반회계	240	100,550	121	41,297 (3)	4	2,201	
공기업특별회계	3	2,188	4	1,020	0	0	
기타특별회계	1	27	2	122	0	0	

※ ()는 자금없는 이월액임

명시이월은 244건 102,765백만원, 사고이월 127건 42,439백만원, 계속비이월 4건 2,201백만원으로 확인하였고, 향후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이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을 하여야 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기금의 결산

2020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금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13개)		45,999	12,233	39,020	26,787	58,232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3,909	22,526	24,850	2,324	36,435
	재정안정화계정	4,054	76	76	0	4,130
자활기금		1,960	55	83	28	2,015
장애인복지기금		397	△68	5	73	329

지역문화진흥기금	1,329	△44	10	53	1,286
체육기금	2,201	△125	30	156	2,075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228	△165	1,032	1,197	1,063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기금	120	5	15	10	125
중소기업육성기금	8,943	△2,352	83	2,435	6,591
투자유치진흥기금	10	79	83	4	89
식품진흥기금	238	△55	77	132	183
재난관리기금	11,379	△7,830	12,544	20,374	3,549
옥외광고발전기금	233	29	32	2	262
남북교류협력기금	0	101	101	0	101

2020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의 조성액 45,999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39,020백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26,787백만원을 공제한 58,232백만원이다.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 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47,338	48,357	44,061	49,398	45,999	△0.7
당해연도 조성액	23,668	6,536	10,166	4,763	39,020	13.3
당해연도 사용액	22,648	10,832	4,829	8,162	26,788	4.3
당해연도말 조성액	48,357	44,061	49,398	45,999	58,232	4.8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약 9% 낮으며 회계연도말의 기금조성액은 평균적으로 약 4.8% 증가하였다.

기금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 이월 (사고 등)	수입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계(13개)		150	70,212	70,016	346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	35,830	35,830	0
	재정안정화계정	0	4,130	4,130	0
자활기금		0	659	659	0
장애인복지기금		0	117	117	0
지역문화진흥기금		0	339	339	0
체육기금		0	191	191	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0	1,710	1,710	0
전통시장 주차장관리기금		0	64	64	0
중소기업육성기금		0	2,627	2,627	0
투자유치진흥기금		0	93	93	0
식품진흥기금		0	315	315	0
재난관리기금		150	23,772	23,576	346
옥외광고발전기금		0	264	264	0
남북교류협력기금		0	101	101	0

2020년도 기금 수입액은 70,212백만원, 지출액은 70,016백만원으로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하였다.

4. 재무제표의 결산

2020회계연도 양산시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20	2019	전년대비 증감(-)	
			금액	비율
자산	5,601,570	5,304,802	296,768	5.59
Ⅰ. 유 동 자 산	364,113	344,601	19,512	5.66
Ⅱ. 투 자 자 산	7,830	11,205	△3,375	30.2
Ⅲ. 일반유형자산	226,202	220,328	5,874	2.67
Ⅳ. 주민편의시설	973,283	892,796	80,487	9.02
Ⅴ. 사회기반시설	4,024,029	3,830,285	193,744	5.06
Ⅵ. 기타비유동자산	6,113	5,587	526	9.41
부채	88,283	92,528	△4,245	4.59
Ⅰ. 유 동 부 채	13,016	11,275	1,741	15.44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기타비유동부채	75,267	81,253	△5,986	7.37
순자산	5,513,287	5,212,274	301,013	5.78
Ⅰ. 고정순자산	5,162,317	4,876,557	285,760	5.86
Ⅱ. 특정순자산	21,980	32,309	△10,329	31.97
Ⅲ. 일반순자산	328,990	303,408	25,582	8.43

2020회계연도 양산시의 순자산은 5,513,287백만원이고, 전년대비 301,013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5.78%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2,718백만원(6.50%) 증가하였다. 총자산은 5,601,57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96,768만원(5.59%) 증가하였는데, 총자산의 증가는 시설비 투자에 따른 사회기반 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의 증가 및 재정자금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그리고 총부채는 88,28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245백만원(4.59%) 감소하였으며, 총부채의 감소는 국·도비보조금 잔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하수도공기업 BTL미지급금 잔액 감소에 의한 것이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19	전년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사업순원가 (가 - 나)	334,697	371,082	△36,385	△9.81
가. 사업총원가	1,000,892	783,675	217,217	27.71
나. 사업수익	666,195	412,593	253,602	61.46
II. 관리운영비	88,309	78,286	10,023	12.80
III. 비배분비용	54,323	55,786	△1,463	△2.57
IV. 비배분수익	34,364	36,880	△2,516	△6.82
V. 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	442,966	468,274	△25,308	△5.40
VI. 일반수익	651,303	663,893	△12,590	△1.90
VII. 재정운영결과 (V-VI)	(208,337)	(195,619)	△12,718	6.50

2020회계연도 양산시의 사업순원가는 334,697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 88,309백만원, 비배분비용 54,323백만원 및 비배분수익 34,364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442,966백만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651,303백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 (수익-비용)은 208,337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2,718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비용보다 수익이 더 크게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성과보고서

양산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0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양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정책사업목표-단위사업’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과목표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38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2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B)	미달성	달성률 (B/A)
계	18	138	229	181	48	79
기획예산담당관	1	4	5	3	2	60
소통담당관	1	2	4	2	2	50
감사담당관	1	1	2	1	1	50
평생교육담당관	1	3	4	3	1	75
복지문화국	1	17	32	27	5	84
환경녹지국	1	12	23	18	5	78
경제산업국	1	16	27	20	7	74
안전도시국	1	11	17	16	1	94
개발주택국	1	8	12	11	1	92
행정지원국	1	8	17	12	5	71
웅상출장소	1	31	39	33	6	85
보건소	1	6	13	12	1	92
농업기술센터	1	7	14	12	2	86
상하수도사업소	1	7	10	7	3	70
차량등록사업소	1	1	3	2	1	67
시립박물관	1	2	2	0	2	0
시립도서관	1	1	2	1	1	50
의회사무국	1	1	3	1	2	33

양산시는 2020회계연도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총 138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2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양산시의 성과지표 전체 달성률은 79%이며, 실국별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안전 도시국 94%, 개발주택국, 보건소 92%를 달성한 반면, 시립박물관 0%, 의회사무국 33%,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립도서관은 50%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다. 효율적인 예산집행관리 도모 및 재정운용을 목적으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지표 설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채권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10,280	3,226	4,185	9,321
일반회계	4,354	138	311	4,181
기타특별회계	5,926	3,089	3,875	5,14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62	207	79	1,489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4,564	2,882	3,795	3,651

검사결과 채권의 현재액(이자포함)은 9,321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

(2) 채무

전년도말 및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음으로 확인하였다.

(3) 공유재산

2020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3,505,815	337,350	26,824	3,816,341
소계	3,480,155	337,153	24,496	3,792,813
공공용재산	372,642	8,662	1,243	380,062
공용재산	3,107,506	328,491	23,253	3,412,744
기업용재산	0	0	0	0
보존용재산	7	0	0	7
일반재산	25,660	197	2,328	23,528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310,526백만원이 증가한 3,816,341백만원이다. 행정재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내역은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에 따른 부지매입 등이다. 일반재산은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내역은 매각 이다

(4) 물품

2020회계연도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량	1,132	112	103	1,141
금액	15,446	1,071	1,152	15,365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대비 81백만원이 감소한 15,365백만원으로, 감소사유는 노후 차량 및 냉난방기, 컴퓨터 등의 처분 등으로 발생한 것이다.

7. 금고의 결산

(1) 세입·세출

2020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세입	세출	잔 액		
			이월액	보조금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계	1,648,092	1,358,313	147,402	10,267	132,110
일반회계	1,484,698	1,256,330	144,044	10,017	74,306
특별회계	163,395	101,983	3,358	250	57,804

세입은 1,648,092백만원이고, 세출은 1,358,313백만원으로, 결산상잉여금과 잔고 내역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2) 세입세출외현금

2020회계연도의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2,352,821,791	167,171,991	2,519,993,782
보충금	304,312,560	△199,479,451	104,833,109
보관금	2,047,225,372	367,077,191	2,414,302,563
잡종금등 기타	1,283,859	△425,749	858,110

세입세출외현금은 전년도말 2,352백만원에서 167백만원이 증가하여 2020회계연도말 기준 2,519백만원임을 확인하였다.

8. 성인지결산

2020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상 사업개수 100개에서 결산서상 98개로 정리되며, 집행률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단위: 원)

회 계 별		사업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98	140,939,302,130	139,067,712,260	98.67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계	28	108,411,867,000	107,693,705,450	99.34
	일반회계	28	108,411,867,000	107,693,705,450	99.34
	기타특별회계	0	0	0	0.0
	기금	0	0	0	0.0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소계	56	24,090,600,170	23,122,970,662	95.98
	일반회계	55	21,445,270,170	20,687,732,852	96.47
	기타특별회계	0	0	0	0.0
	기금	1	2,645,330,000	2,435,237,810	92.06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14	8,436,834,960	8,251,036,148	97.80
	일반회계	14	8,436,834,960	8,251,036,148	97.80
	기타특별회계	0	0	0	0.0
	기금	0	0	0	0.0

2020회계연도 대상사업별로 살펴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56개로 가장 많고,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28개에 그쳤으며 자치단체특화사업은 14개로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31개로 전체의 31.63% 그 가운데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이 20개로 분야의 64.51%에 달한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복지문화국이 26개로 전체의 26.53%이며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가 12개로 전체의 12.24%이며 주무국의 46.15%를 차지한다.

Ⅳ .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IV.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입 · 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5년간 세입 · 세출예산 평균 증가율 및 잉여금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증가율(%)
세입예산		1,074,424	1,201,290	1,294,459	1,396,020	1,648,092	11.3
세출예산		873,518	919,462	1,037,350	1,129,534	1,358,313	11.7
결 산 상 잉 여 금	계	200,905	281,827	257,109	266,486	289,779	9.6
	이월액	115,473	166,060	152,652	160,271	147,402	6.3
	보조금실제반납금	3,716	6,100	4,185	8,601	10,267	28.9
	순세계잉여금	81,717	109,667	100,272	97,613	132,110	12.8

[현황]

결산상잉여금은 289,77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다.

특히 일반회계 잉여금은 전년 대비 20%나 증가하였으며, 그 구성내용은 이월금 144,044백만원, 보조금반납액 10,01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74,306백만원이다.

[권고사항]

결산상잉여금의 주요 증가원인은 세입 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와 세출 예산액보다 실제 지출액이 적게 지출된 경우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세입 · 세출 추계를 적시에 하여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집행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앞으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하여 균형재정 목표 달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 세입결산

가. 세입의 적정성

지방세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액 차이 (B)-(A)
합 계	281,900	338,236	315,301	1,917	21,018	33,401
주민세	13,200	13,558	13,266	0	293	66
재산세	78,600	81,924	78,282	20	3,622	△318
자동차세	83,200	116,646	112,633	0	4,013	29,433
담배소비세	23,600	23,674	23,674	0	0	74
지방소비세	11,600	11,557	11,557	0	0	△43
지방소득세	68,700	74,324	72,220	4	2,100	3,520
지난년도수입	3,000	16,553	3,670	1,893	10,990	670

[현황]

2020년 세입결산 중 지방세수입이 예산액 대비 33,401백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자동차세 재원인 유가보조금의 실제수납액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권고사항]

매년 유가보조금의 세입 추계 예측이 어려워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세입 추계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입의 추계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적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통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하여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고려하여 세입을 전망 하고, 향후 예측 가능한 세입부분은 추계 분석을 통해 세입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나.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최근 5년간 잉여금 추이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잉 여 금		이월금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소 계	전년대비(%)			금 액	전년대비(%)
2020	228,367	20	144,044	10,017	74,306	192.9
2019	190,291	△4.4	156,366	8,557	25,366	△44.0
2018	199,011	△14.9	149,527	4,126	45,358	△30.6
2017	233,868	49.2	162,478	6,039	65,351	37.4
2016	156,699	14.1	112,225	3,595	40,879	△27.8

※ 일반회계 기준

[현황]

2017년부터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던 잉여금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0회계연도는 순세계잉여금이 192.9%로 크게 증가하였다.

순세계잉여금 증가 사유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결산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11월 13일 이후 자금이 교부됨으로써 실제수납액이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유가보조금 84,481백만원 중 2020년 11월 ~ 12월분 37,933백만원이 세입에 미반영되었다.

둘째, 예산현액 대비 교부세, 교부금 실제수납액 3,782백만원이 세입에 미반영되었다. 특히 특별조정교부금 806백만원, 특별교부세 700백만원은 예산현액에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세 · 교부금의 예산현액 전액 미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	과목	예산현액	수납액	차액	사유
자원순환과	특별조정교부금	0	40	40	2020.12.29. 교부
행정과	특별조정교부금	0	766	766	2020.12.29. 교부
출)경제교통과	특별교부세	0	700	700	2020.12.7. 교부

[권고사항]

결산추경 편성이후 연말에 유가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가 한꺼번에 교부됨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못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나타나고 있으며 교부시기의 불투명으로 인한 세입추계의 어려움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균형재정을 목표로 세입부서와 예산부서의 긴밀한 상호협의를 통해 초과 세입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자원별 세입수납액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평균 증가율
합계		788,515	901,163	909,073	1,024,884	1,265,859	12.56
자 체 수 입	소계	298,371	309,782	316,890	288,655	358,390	4.69
	지방세	256,252	270,130	283,202	245,754	315,301	5.32
	세외수입	42,118	39,652	33,688	42,901	43,090	0.57
	이전수입						
이 전 수 입	소계	490,144	591,381	592,183	736,229	907,469	16.65
	지방교부세	136,146	195,459	203,704	257,528	229,005	13.88
	조정교부금	61,641	84,547	59,202	75,268	73,573	4.52
	보조금	292,356	311,376	329,277	403,433	604,892	19.93

※ 일반회계 기준

재정지표(세입)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재정자립도	31.96	36.89	35.93	33.55	29.86
재정자주도	57.40	58.68	58.76	58.10	55.76

[현황]

양산시 재정자립도는 2017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2020년 재정자립도는 29.86%로 전국 시 평균 33.5%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20년 일반회계 전체 세입 증가액 중 이전재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3.69% 낮아졌다.

재정자주도는 2018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0년 재정자주도는 55.76%로 전국 시 평균 63.8%에 비해 낮은 편이다.

[권고사항]

재정자립도는 자원 조달면에서의 자립정도를 나타낸다.

재정자립도는 재정지표상 다른 단체에 비하여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이의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활용한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44위로 전국 시 평균 33.5% 이하로서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이러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세 등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재정자주도는 자원 사용면에서 자주권·자율권을 나타낸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여기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자원 활용 능력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 예산 불부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A)	수령액(B)	차 액(B-A)		
			소계	초과수령	감액수령
2020	610,907	611,257	350	500	150

[현황]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과 수령액의 불부합의 주된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 미반영, 결산 추경 후 통보 등이다.

[권고사항]

보조금 교부시 세입조치는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변동사항을 늦게 인지하여 미반영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부서 및 담당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상황 대사 및 담당자의 철저한 집행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마. 불납결손액 처분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4,409	5,295	2,930	3,825	3,197
일반회계	4,139	5,066	2,799	3,164	3,166
특별회계	270	229	131	661	32
공기업특별회계	163	229	131	70	17
기타특별회계	107	0	0	591	15

[현황]

2020년도는 전년대비 불납결손액이 628백만원 감소하였다.
일반회계는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29백만원 감소하였다.

[권고사항]

일반회계의 경우, 불납결손액은 배분금액의 부족, 평가액의 부족으로 인한 사유가 작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납세자의 재정상태 부실로 인한 불가피한 결손처분으로 보이나, 결손액의 증가는 결국 세입 징수 포기로서 세수 감소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에 큰 손실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효소멸 전에 체납자들에 대하여 압류와 지속적인 재산 추적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세입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바. 세입금 환급액의 증가

[현황]

세입금환급액은 8,99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29백만원 증가하였고, 주된 이유는 국세경정, 법령개정, 법인정산 사유의 증가이며 행정기관의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착오로 인한 사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권고사항]

세입금 환급금은 전년보다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법령에 의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의한 증가가 주된 사유로 보인다, 행정기관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거나,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후는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안내문 개별발송, 계좌번호 조회, 직접 통화 등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세입 환급금 발생 및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세출결산

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B)				보조금 반납금 (C)	집행 잔액 (D)	비율	
			계(B)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B/A	D/A
합계	1,609,154	1,358,313	147,405	102,765	42,439	2,201	10,504	92,932	9.16	5.78
일반회계	1,444,735	1,256,330	144,047	100,550	41,296	2,201	10,454	33,904	9.97	2.35
특별회계	164,419	101,983	3,358	2,215	1,142		50	59,029	2.04	35.9

[현황]

2020년도 예산의 이월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보조금반납액은 전년대비 1,459백만원 (일반회계) 증가하였다.

전체 예산의 집행잔액은 92,932백만원으로 5.78%이다.

[권고사항]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연내 최대한 사업비를 집행하여 잔액 발생을 줄여야 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추경시 정리를 통해 타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향후 지속적으로 이월액은 최소화 하고, 보조금의 추계를 적정하게 하여 반납금을 줄이는 등 잉여금의 발생을 줄여야 할 것이다.

나. 예비비 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지출잔액 (D=A-B-C)
합계	9,174	3,833	2,985	225	623
일반회계	6,408	3,833	2,985	225	623
특별회계	2,766	0	0	0	0

[현황]

2020년도 예산액은 9,174백만원으로 호계천 수해복구공사 사업 외 123건 2,985백만원을 지출하고 225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2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2,766백만원으로 지출액은 0원이다.

[권고사항]

예비비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으로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20년도는 수해복구공사 및 코로나 19로 인한 마스크구입비 등 감염병에 따른 적재적소의 비용 지출로 예비비 사용목적이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로도 예비비는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중대하고도 거액인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추경의 편성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등 목적에 맞게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현황]

예산이용 건수는 없으며, 전용은 10건, 340백만원, 이체는 78건, 8,776백만원이다.

[권고사항]

예산이체는 2020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집행 현황으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다. 예산전용은 전년대비 3건, 96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전년에 특별회계 전용이 0건이었으나 올해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대체인력 인건비 1건, 14백만원의 전용예산이 집행되었다.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각 세항 또는 목에 각각 책정되어 있는 예산액을 상호 바꾸어 쓰는 것이다.

이는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시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전용 승인 시 봉급, 공공요금 등과 같은 경직성 경비는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시 각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고, 필요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경예산을 통한 증감 조정 후 예산을 집행하는 등 전용 예산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세출의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의 적정성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단위:백만원)

성질별	2020년 결산액	비율(%)	2019년 결산액	비율(%)
합계	1,358,313	100.0	1,129,534	100.0
인건비	108,768	8.01	99,026	8.77
물건비	71,277	5.25	77,853	6.89
경상이전	753,826	55.50	569,042	50.38
자본지출	376,821	27.74	359,440	31.82
용자 및 출자	1,133	0.08	2,400	0.21
내부거래	35,099	2.58	13,825	1.22
예비비 및 기타	11,389	0.84	7,949	0.70

[현황]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액 중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민간이전금인 경상이전 지출액이 전체의 55.50%로 전년대비 5.12% 증가, 경상비인 인건비와 물건비 지출액은 13.26%로 전년대비 2.4% 감소,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4.08% 감소, 예비비 및 기타 지출액은 전년대비 0.14%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권고사항]

○ 경상비인 인건비와 물건비를 제외하고 전체 예산대비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이 전체 83.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보조금,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민간대행 사업비 등으로 시민 및 단체에서 직접 지출하는 비용인 만큼 지출액에 대한 모든 책임이 해당 단체에 있다. 그러므로 예산집행을 위한 대상자(사업자) 선정부터 향후 집행비 정산까지 사업목적에 부합한 집행과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경상이전 중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과 법정보조금을 제외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본 회계연도에서 민간이전 대비 특히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의 민간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바, 행정의 신뢰도와 사업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권고한다.

연도별 민간경상사업 보조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민간경상사업보조	8,248	0.8	8,434	0.8	10,188	0.9	11,668	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들에 한정하여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여 민간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양산시의 과거 3년간 민간이전 예산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8,434백만원, 2019년 10,188백만원, 2020년 11,668백만원 등 해가 거듭할수록 보조금액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음에 따라

보조사업 책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방만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 책정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한다.

마. 지방보조금의 관리

[현황]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지방보조금관리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2020.3.30.개정)」에 근거하여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일반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보조사업 전체에 대한 총괄소요금액의 객관적인 원가 산정 없이 해당업체의 단일 견적에 의하여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권고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 수의계약기준에는 용역·물품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 양산시 관내 업체 중 2인 이상 견적에 의해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여성기업인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보조사업자는 2개공종 총 사업비 5천만원이 초과됨에도 전체사업에 대한 소요 원가산정 없이 업자의 단일견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소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바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양산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있거나 공사의 종류에 따라 면허소지 등 관내에 조건을 구비한 업체가 있을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부조건에 적극 권고함으로써 지역 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권고한다.

바. 이월사업 예산운용 부적정

(단위: 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
계			889,232,250	0	889,232,250	
체육지원과	상북스포츠파크 조성	401-03 시설부대비	2,000,000	0	2,000,000	명시
자원순환과	유산폐기물매립장 토사제방 설치	401-03 시설부대비	579,530	0	579,530	명시
투자유치과	양산일반산업단지 혁신사업	401-03 시설부대비	3,000,000	0	3,000,000	사고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호포새동네 진입도로 개설)	401-03 시설부대비	2,000,000	0	2,000,000	명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호포새동네 진입도로 개설)	401-03 시설부대비	2,000,000	0	2,000,000	사고
도로시설과	동면호포도시계획도로(소3-276) 개설	401-01 시설비	214,104,500	0	214,104,500	명시
도로시설과	상북소석도시계획도로(대3-1호선) 개설	401-01 시설비	244,510,320	0	244,510,320	사고
도로시설과	낙동강 강변자연문화 경관도로사업 (전환사업)	401-01 시설비	419,090,000	0	419,090,000	사고
지역재생과	신기마을 골목환경개선사업	201-03 행사운영비	750,000	0	750,000	명시
하수과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 정비)-노후하수관로정비	401-03 시설부대비	1,197,900	0	1,197,900	명시

[현황]

이월예산 중 전액불용 사업 현황을 보면 총 10건, 889백만원이며, 주요 원인별로 보면 소송으로 인한 공사중지, 사업계획 변경, 사업 포기,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다.

[권고사항]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그 규모나 사업비의 성격상 예산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관련 업무에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향후에는 어쩔 수 없이 법령에 의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는 물론 총괄부서에서도 관리·감독 통합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하여 줄 것을 권고한다.

2. 재무제표의 검토

(1)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 산정

[현황]

2020년도 양산시재무제표에 대한 「주석17」에 기재된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금 전환금및예치금차감전)는 9,391,667,386원으로 퇴직금지급대상근로자가 2020년 12월 31일 퇴직 시 지급해야할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한편, 퇴직금은 ' $\text{평균임금} \times \text{계속근로기간}$ '으로 산정되는바 평균임금의 산정시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를 득해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한 기간의 급여를 제외한 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하나, 휴직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추계액을 산정함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과소 산정되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하여서도 취업규칙 등 노사와 협의된 조건에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조건인 경우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권고사항]

퇴직금추계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부서에 집계하는 서식에 휴직자의 경우는 휴직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서식을 개선하여 퇴직금추계액을 집계하기를 권고한다.

3.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성과 지표수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달성	미달성	달성률 (%)			
계	18	229	181	48	79.0	1,275,156	1,053,928	221,228
기획예산담당관	1	5	3	2	60.0	14,480	15,517	△1,037
소통담당관	1	4	2	2	50.0	2,023	2,165	△142
감사담당관	1	2	1	1	50.0	154	204	△49
평생교육담당관	1	4	3	1	75.0	18,135	17,329	806
복지문화국	1	32	27	5	84.4	574,197	400,254	173,943
환경녹지국	1	23	18	5	78.3	110,982	86,982	24,000
경제산업국	1	27	20	7	74.1	58,913	35,228	23,685
안전도시국	1	17	16	1	94.1	176,101	156,581	19,520
개발주택국	1	12	11	1	91.7	63,174	62,123	1,051
행정지원국	1	17	12	5	70.6	99,770	100,685	△915
웅상출장소	1	39	33	6	84.6	42,932	47,944	△5,012
보건소	1	13	12	1	92.3	21,940	18,927	3,013
농업기술센터	1	14	12	2	85.7	24,441	29,041	△4,600
상하수도사업소	1	10	7	3	70.0	44,871	61,019	△16,147
차량등록사업소	1	3	2	1	66.7	444	493	△49
시립박물관	1	2	0	2	0.0	1,528	2,174	△645
시립도서관	1	2	1	1	50.0	9,834	5,127	4,707
읍면동	0	0	0	0	0.0	8,206	9,224	△1,018
의회사무국	1	3	1	2	33.3	3,029	2,910	119

[현황]

단위사업 중 예산비중이 큰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누락되었거나, 정책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구체적·계량화 할 수 있는 지표설명이 부족하고,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예산성과의 본래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표가 있다.

[권고사항]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서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2017.9.11. 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에 의하면 예산성과계획에는 당해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는 과거 추계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성과계획과 예산체계를 일치시켜 정책사업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산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예산성과 계획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단위사업 중 일부는 비예산사업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거나, 정책목표의 사업과 다소 거리가 있는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예산성과의 취지를 살리는데 다소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부서별 성과지표를 설정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한 측정가능한 지표와 예산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가 반드시 설정되어야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목표값 대비 과도하게 초과달성한 22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값을 설정함에 있어 목표치가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단순히 회의 개최 또는 현장점검 및 확인 등으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지표, 또한 과거의 실적에서 일정률을 가산한 값을 목표 값으로 설정함에 따라 목표 대비 과도하게 높은 실적을 달성하는 지표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표의 적정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성과지표 관련 자료의 생성과 효율성 등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공유재산

(1) 공유재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고
		증	감		
합계	3,505,815	337,350	26,824	3,816,341	
토지	1,771,629	199,123	25,767	1,944,984	
건물	521,238	29,980	57	551,161	
공작물	1,183,537	107,198	0	1,290,735	
기타	29,411	1,050	1,000	29,461	

[현황]

공유재산 임대료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사유
727	638	618	20	납세태만

공유재산 실태조사 조치결과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무단점유 건수	변상금 부과		비고
		건수	금액	
계	73	72	104	
도유재산	25	25	9	
시유재산	48	47	95	1건 원상복구명령

○ 공유재산 연부 취득 현황 : 해당없음

[권고사항]

대부료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제35조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허가 취소, 대부 중단 등을 통하여 미수납액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1회 실시하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등을 조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변상금 부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한다.

5. 성인지 결산서

[현황]

양산시는 「지방재정법」 개정(11.03.08)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지방의회 제출 의무화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결산서를 작성·제출 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은 양산시의 재원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미리 분석하여 양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부칙>제2조, 시행령 제40조의 2, <부칙>제3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2, 제8조의 3, 시행령 제6조의 2, 제6조의 3 및 「지방회계법」 제1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5조에 둔다. 성인지 예산서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작성기준을 토대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자치단체장 공약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사업의 선정은 여성가족과에서 사업부서 및 성별영향평가센터 등과 협의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하고, 총괄부서인 예산부서에서 최종 확정 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매년 거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에는 개요와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와 성별 수혜분석이 성인지 결산서에는 개요와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과 평가 등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을 뿐, 작성 주체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주체는 법적규정이 없다는 것에 그 맹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대상사업 선정에서부터 결산서 작성에 이르기 까지 성인지 교육 강화와 중간점검 등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상호 협의를 통해 가시화 시키고 성과 중심의 성인지 예산이 아닌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실질적·체계적 정립으로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제도 시행 10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중앙부처에 요구되는 사항이다.

최근 3년간의 성인지 결산서상 사업개수, 지출액과 집행률은 아래의 표와 같다.

최근 3년간 사업별 결산

(단위: 개,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사업개수	162	140	98
	지출액	201,089,349,562	206,076,641,403	139,067,712,260
	집행률	89.07%	93.10%	98.67%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사업개수	57	63	28
	지출액	113,963,992,032	171,463,027,511	107,693,705,450
	집행률	95.54%	98.10%	99.34%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사업개수	85	69	56
	지출액	79,968,623,216	33,894,049,671	23,122,970,662
	집행률	80.61%	73.96%	95.98%
자치단체특화 사업	사업개수	20	8	14
	지출액	7,156,734,314	719,564,221	8,251,036,148
	집행률	98.03%	97.56%	97.80%

※ 기타특별회계, 기금 포함

최근 3년 동안의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사업별 수는 감소되었으나, 그에 반해 집행률은 높게 나타난다. 특히 202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에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사업개수가 예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음에도 집행률은 최고로 나타남으로서 예산서 작성 시 대상사업 선정에서부터 기준조차 모호한 것으로 보인다.

[권고사항]

성평등 사회는 시대적 책무이다. 문제는 세계적인 성인지 평가에서 좋은 인식을 갖기 위한 기준에서 이제는 탈피하여 우리나라 현 실정에 맞는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한 작성기준을 토대로 하여 여성가족과가 성별영향평가센터 등과 협의하여 최종 작성되어지고 있으므로 사실상 양산시 자체에서 그 틀을 깨기란 쉽지가 않기에 중앙에서부터 현실적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성평등 목표 수립 시 양산시의 성평등 지수와 성평등 현황자료 등을 참고하여 수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임에는 분명하고 사업의 지속성도 필요부분이나 매년 동일한 사업선정에 따른 동일한 결산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에 대하여도 딱히 지적할 수 없음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성인지 예산서를 기준으로 결산서를 분석해 본 결과 본 회계연도에서 사업개수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여성정책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하였음에도 그 원인이 결산서에 나타나지 않아 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성별영향평가센터와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대상사업 다수가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작성기준에서부터 해석이 모호하여 성별영향분석센터를 거치고도 심각한 오류가 나타나는 등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본 회계연도에는 명확하게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임에도 다수의 사업이 선정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서부터 중간점검과 성과지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결산까지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그에 따른 직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를 권고한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매뉴얼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3단계 지정이라는 쾌거를 달성하는 것에 충분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V . 수범사례

V. 수범사례

1. 정책분야

(1) 마스크 신속 허가로 기업의 氣-up! 마스크 조기 생산·공급으로 시민 안전up!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건용 마스크의 품귀현상 및 구매대란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마스크 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양산시는 마스크 생산량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관내 마스크 생산업체를 수시로 방문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확인하여 신속한 허가 절차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관계부처(경남도, 경남TP, 부산지방식약청, 경북TP, 식약처)에 긴급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통상적으로 40일 ~ 수개월 소요되던 마스크공장 인·허가 절차를 2주 만에 완료하였으며, 마스크 추가 생산을 위한 공장 증설 허가 기간도 20일에서 5일 만에 완료하였다.
- 코로나19 확산 및 마스크 부족 사태에 따른 시민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내 기업의 마스크 조기 생산 및 생산량 증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감염병 예방 관리에 기여하였다.
- 또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이러한 양산시의 적극 행정은 여러 언론사에 홍보되었으며, 경남도정책혁신 사례 소개(유튜브),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맛집에 선정되는 등 양산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2. 세입분야

(1) 유가보조금 확보

- 2020회계연도는 전년대비 지방세 수입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동차세의

주재원인 유가보조금 수납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담당부서인 교통과에서 전년도 유가보조금의 세입 감소에 따라 2020회계연도 유가보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방문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2020회계연도 세입 예산보다 약 300억원 많이 수납되어 해당 사업 추진 및 시 재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3. 세출분야

(1) 용역비 절감

-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5개년 중기 기본계획 수립 시, 연구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처리하였다. 이에 ‘2021~2025년 양산시 청년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기존 용역방식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관련 자료 수집·검증, 설문조사, 기본계획 작성 등)하여 관련 연구용역비 예산 18,548천원을 절감하였다.

(2) 도심지 수국명소 조성사업비 절감

-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치유와 휴식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여름철 나무에서 꽃을 피우는 수국으로 도심지 수국 명소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에 관내에 자생하는 수국에서 삼수를 채취하여 초화류육묘장을 활용하여 생산할 경우, 추가비용 없이 수국모종이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 4월 ~ 5월 중 관내 자생하는 재래종 수국에서 직접 삼수를 채취하고 현재 2만 5천주 수국 모종을 시범 생산함으로써 재료비 250백만원을 절감하였다. 그리고 매년 수국모종 3만주를 생산하여 2025년까지 총 15만주 규모의 수국을 직접 생산·식재해 양산시를 한여름 더위에 꽃이 가득한 ‘수국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적인 수국 명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Ⅵ.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내용

Ⅶ. 전년도 검사 결과 조치내용

최근 3년간 검사 결과 지적현황

연도	지적현황	비고
2017	예산의 정확성 제고 및 균형재정 달성 노력 지방세 등 환급으로 인한 행·재정적 손실 세외수입의 세입추계 부적정 채납관리 및 징수노력 국·도비 예산액과 보조금 수령액과의 상이 2016년 이월사업비 집행 잔액 과다발생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의 최소화 성과보고서(성과지표 설정 부적절,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상이 등)	
2018	국·도비 예산액과 보조금 수령 금액과의 불일치 교부세 실제수납액 예산미반영 세입환급금 최소화 노력 예산총계주의 준수 세출예산 사고이월 부적정 사업예산 운용 미흡 전액불용 예산 운용 부적정 예비비 지출 제한 준수 특별회계 정비 필요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성과보고서의 올바른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방법 개선	
2019	세외수입 채납 집중 관리 지방세수입 세입추계 부적정 채납관리 및 징수노력 세입환급금 최소화 노력 교부세·교부금 실제수납액 예산미반영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 예산 불부합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사업예산 운용 미흡 전액불용 예산 운용 부적정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의 최소화 성과보고서의 올바른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방법 개선	

1. 세입

(1) 전년도 권고사항

- 세외수입 체납 집중 관리, 체납관리 및 징수 노력
- 지방세수입 세입추계 부적정
- 세입환급금 최소화 노력
- 교부세 · 교부금 실제수납액 예산미반영

(2) 조치 결과 및 검토

- 2020년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및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부동산 · 자동차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 노력을 하였다.
- 지방세 세수추계시스템을 활용하여 과거 3~5년 결산결과 및 지역경제상황, 세입특수요인 등을 월별 분석하는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방세 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매월 환급 안내문 발송 및 도내 최초 카카오톡채널 '양산시 지방세환급' 운영을 통한 적극적 환급신청을 유도하였다.
예산편성시기와 교부 시기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2. 세출

(1) 전년도 권고사항

- 국 · 도비 보조금 수령액 예산 불부합
- 국 ·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 사업예산 운용 미흡
- 전액불용 예산 운용 부적정
-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의 최소화

(2) 조치결과 및 검토

- 추경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동사항 철저히 확인하여 결산에서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및 불용액 미발생을 위하여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감액 조치 등을 하였다.
- 예산의 전용·변경사용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하고, 목적외 사용과 임의변경 사용은 금지하되, 추가경정예산 일정과 맞지 않아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전 부서에 통보 조치하였다.

3. 성과보고서

(1) 전년도 권고사항

- 예산편성 시 성과계획서를 예산과 연계 되어 작성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예산과 무관한 성과지표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변경
- 성과지표 목표치 하향 설정 및 성과지표 달성을 부진

(2) 조치결과 및 검토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 목표치를 설정할 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하여 작성하며, 기존의 당초예산 편성 시에만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추경예산 편성 시마다 추경예산에 맞게 성과계획서를 변경작성 하여 예산과 성과의 적정성 제고 및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와의 일치도 또한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 성과지표 목표치를 과도하게 하향 설정한 경우 최근 3년간 성과지표 실적 평균치와 현실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 목표치를 재설정 하였고, 성과지표 달성률이 부진한 경우 측정 가능한 구체적 성과지표로 변경하였다.

